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 (어기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710 발의연월일: 2020. 9. 10.

발 의 자 : 어기구 · 김수흥 · 노웅래

박영순 • 박 정 • 서동용

양기대 • 윤준병 • 이규민

이수진 • 이용빈 • 위성곤

허 영 · 허종식 · 홍성국

황운하 의원(16인)

제안이유

최근 들어 지역중소기업 혁신정책의 범위는 확대되었으나 지역중소 기업 혁신을 지원하는 법률체계는 미흡하고 지역중소기업 육성에 관 한 법률도 분리 후 폐지되면서 관련 조문이 유명무실화된 상황임.

유럽의 경우 지역중소기업 혁신정책은 대부분 산·학·민·관의 주체간 협력을 매개로 한 클러스터 정책이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는 반면, 국내의 경우 지역중소기업 지원정책이 다소 존재하고 있으나 정책들이 파편화되면서 지역중소기업 중심의 혁신자원, 금융기관 및 중개기관 간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지역중소기업 혁신정책의 추진환경이 급변하고 특히 지역중소기업의 관점에서 클러스터링을 촉진하고 유도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수립하려고 해도 근거 법령이 미비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미래지향

적 혁신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지역중소기업의 육성과 혁신을 지원할수 있는 근거법 마련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중소기업에 대해 주체적이고 계획적인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의 기반 강화를 도모하고 이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가. 이 법은 지역중소기업 육성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지역중소기업에 대하여 주체적이고 계획적인 사업을 효과적 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의 기반 강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함(안 제1조).
- 나.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3년마다 지역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기본지 침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 쳐 수립하여야 함(안 제3조).
- 다.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중소기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중소기업 간의 협력기반 구축 및 지역중소기업 활동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있음(안 제5조).
- 라. 시·도지사는 지역중소기업 육성사업의 촉진에 관한 기본적인 계획(육성계획)을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

하여야 함(안 제6조).

- 마. 시·도지사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지원기관으로서 지역중소기업 육 성협의회를 조직할 수 있음(안 제9조).
- 바. 시·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지정 대상 행정구역 및 지원 내용을 기재하여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특별지역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함(안 제11조).
- 사.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」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운영에 있어서 지역중소기업의 우선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함(안 제14조).
- 아.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략적인 경영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지역중소기업을 지역혁신 선도 중소기업으로 선정하여 지역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 우대할 수 있음(안 제15조).
- 자. 정부는 지역중소기업의 창업 촉진, 경영 기반 확충 및 구조고도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함(안 제16조).
- 차. 정부는 국책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지역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참여하게 하여야 함(안 제17조).
- 타.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중소기업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 거점 확보를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(안 제18

조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어기구의원이 대표발한 「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안」(의안번호 제3711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 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 어야 할 것임. 법률 제 호

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지역중소기업 육성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중소기업에 대하여 주체적이고 계획적인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의 기반 강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지역중소기업"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사·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특별시·광역시·특 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의 관할구역에 있 는 자를 말한다.
 - 가.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자
 - 나.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 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
- 2. "지역중소기업 육성사업"이란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을

통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역에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미치는 사업을 말한다.

- 3. "지역중소기업 육성 지원기관"이란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및 그성과 이전의 촉진, 시장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보제공, 경영능률 향상의 촉진, 자금 융통의 원활화 등과 같은 지역중소기업 육성사업 지원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.
- 4. "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특별지역"이란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위기에 처하여 지역경제여건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어 일정기간 동안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제11조에 따라 지정되는 지역을 말한다.
- 제3조(기본지침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3년마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에 관한 기본지침(이하 "기본지침"이라 한다)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.
 - ② 기본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지역중소기업 육성사업의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
 가. 지역중소기업 육성사업 촉진의 목표
 - 나.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육성구역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중점육성구역의 설정
 - 다. 지역중소기업 육성사업의 촉진을 위해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는 자연적, 경제적, 또는 사회적인 관점에서 본 지역의 특성라. 지역중소기업 육성사업의 촉진에 이바지하는 제도의 정비. 지

역중소기업 육성사업과 관련된 정보처리의 촉진을 위한 환경정비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사업의 촉진에 필요한 사업환경의 정비

- 마. 지역중소기업 육성 지원기관이 수행하는 지원사업 및 지역중 소기업 육성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종합적인 지원체제의 정비
- 바. 기타 지역중소기업 육성사업의 촉진에 관한 중요사항
- 2. 지역중소기업 육성 지원기관의 연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
 가. 지역중소기업 육성 지원기관의 연계가 갖는 의미와 목표
 나. 지역중소기업 육성 지원기관의 연계에 의해 실시하는 사업의
 내용 및 실시방법
-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경제사정의 변동 및 기타 환경의 변화 추이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지침을 변경할 수 있다.
-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지침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려 할때에는 사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-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지침을 정했거나 이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.
- 제4조(실태조사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중소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제6조에 따른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·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지역중소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.

-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, 지역 중소기업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- 제5조(종합관리시스템 구축·운영)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중소기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중소기업 간의 협력기반 구축 및 지역중소기업 활동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 관리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
제2장 지역중소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조정

- 제6조(지역중소기업 육성계획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 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는 기본지침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육성사업의 촉진에 관한 기본적인 계획(이하 "육 성계획" 이라 한다)을 매년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육성계획의 대상이 되는 구역(이하 "육성구역"이라 한다)
 - 2. 지역중소기업 육성사업의 촉진에 의한 경제적 효과에 관한 목표
 - 3. 지역중소기업 육성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내용에 관한 사항

- 4. 육성구역 내에서 특히 중점적으로 지역중소기업 육성사업의 촉진을 도모할 구역을 정할 경우에는 그 해당 구역
- 5. 지역중소기업 육성사업의 촉진과 관련하여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는 해당 지역의 자연적, 경제적, 사회적 특성
- 6. 지역중소기업 육성사업의 촉진에 이바지하는 제도의 정비, 공공 데이터의 민간공개 추진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사업 촉진에 필요한 사업환경의 정비
- 7. 지역중소기업 육성 지원기관이 수행하는 지원 사업의 내용 및 실행방법
- 8. 환경 보전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사업의 촉진과 관련하여 고려가 필요한 사항
- 9. 지역중소기업 육성사업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토지 이용 조정과 관련한 사항
- ③ 시·도지사는 육성계획을 작성할 때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가 조직되어 있을 때에는 해당 육성계획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해당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와 협의를 거쳐야한다.
- ④ 육성계획은 국토운용계획 및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지역진흥과 관련된 계획, 도로·하천·철도·항만·공항 등의 시설에 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, 농지진흥지역 정비계획과의 조화가 보장 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.

- ⑤ 육성계획은 지역중소기업 육성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 도록 추진 주체간의 역할분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.
-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육성계획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승인하여야 한다.
- 1. 기본지침에 적합한 것
- 2. 당해 육성계획의 실시에 의해 지역중소기업 육성사업이 육성구역의 사업자에 대해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
- 3. 원활하고 확실하게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
-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육성계획에 관하여 전항의 따른 승인을 진행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- ⑧ 시·도지사는 육성계획이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.
- 제7조(육성계획의 변경) ① 시·도지사는 승인된 육성계획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중소기업벤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다만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② 시·도지사는 전항의 단서에 따라 육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을 한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고, 변경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.

- 제8조(보고 요청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·도지사에게 승인을 행한 육성계획(이하 "승인 육성계획"이라 한다)의 진행상황에 관하여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.
 - ② 제7조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이 변경이 있었던 때에는 그 변경된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.
- 제9조(지역중소기업 육성협의회) ① 시·도지사는 육성계획의 작성, 승인 육성계획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사업의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역중소기 업 육성 지원기관으로서 지역중소기업 육성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조직할 수 있다.
 -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자를 구성원으로 한다.
 - 1. 육성구역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상공회의소
 - 2. 육성구역 또는 그 인근에 소재한 대학 및 연구기관
 - 3. 지역중소기업 육성사업의 촉진에 관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보 유한 자
 - 4. 기타 육성계획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실시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자
 - ③ 시·도지사는 협의회를 조직하려고 할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지를 공표하여야 한다.
 - ④ 시·도지사가 협의회 조직을 공표한 경우 제2항제1호 또는 제2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아직 협의회에 가입하지 않은 자는 중소벤처

- 기업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에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.
- ⑤ 협의회는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육성구역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자료의 제공, 의견의 표명, 설명 및 협조를 요청할수 있다.
- ⑥ 협의회 산하에 기능별 분과위원회 및 지역별 실무위원회를 중소 기업벤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⑦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 한다.
- 제10조(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보의 제공 등) ① 국가는 시·도지사의 육성계획의 작성 및 승인 육성계획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역의 경제동향에 관한 정보, 해당 시·도에 의한 지역중소기업 육성사업의 촉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·정리 및 분석하여 제공하고, 해당 시·도가 이들 정보를 수집·정리 및 분석을 원활하게 할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 - ② 국가는 육성계획에 관계되는 시·도에 대하여 해당 승인 육성계획의 원활한 실시에 필요한 조언을 하여야 한다.

제3장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및 발전 지원

제11조(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특별지역의 지정) ① 시·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특별지역

- 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지정 대상 행정구역 및 지원 내용을 기재하여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.
-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특별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기관의 의견을 듣고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결과에따라 지정 여부, 지원 내용 및 지정 기간을 결정하여 시·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결정한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중소기업 위기 대응 특별지역에 대한 지정 신청, 지정 절차 및 지정 기간, 지원의 종류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2조(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특별지역에 대한 지원 등) ① 중소벤처 기업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사 항을 소관별로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특별지역에 지원하여야 한다.
 -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한 내역을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③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의 효과 및 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

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- 제13조(위기지역 중소기업 지원센터의 운영 및 지원 등) ① 중소벤처 기업부장관은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특별지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위기지역 중소기업 지원센터(이하 "지원센터"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 -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 - 1. 위기지역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,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및 해외진출 지원
 - 2. 위기지역중소기업에 대한 경영·법률·세무 등의 상담
 - 3.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
 - ③ 국가는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 - ④ 지원센터의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4조(지역특화사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우선 참여권 부여) ① 중소벤 처기업부장관은 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 특례법」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운영에 있어서 지역중소기업 의 우선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한다.
 - ② 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」 제12 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 해서는 지역중소기업 육성협의회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.

- 1. 특화특구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
- 2. 특화특구의 지정·해제에 관한 사항
- 3. 특화특구계획에 관한 사항
- 4. 규제특례의 적용·변경·취소에 관한 사항
- 5. 특화특구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간 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
- 6. 특화특구운영의 평가에 관한 사항
- 7. 그 밖에 특화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제15조(지역혁신 선도 중소기업의 지정 및 지원 등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략적인 경영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지역중소기업을 지역혁신 선도 중소기업으로 선정하여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41조에 따른 입지 지원과 제16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육기금 지원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.
 - ② 선정을 받으려는 지역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.
 -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받으려는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심사를 하고, 지정기준에 적합하면 유효기간을 정하여 지정을 하여야 한다.
 -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정을 받은 지역중소기업이 거짓이나 그

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
-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정을 받은 지역중소기업이 인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-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지정의 절차, 지정기준, 지정업무 운영기관 지정, 지정의 유효기간,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6조(지역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설치 및 재원 조성) ① 정부는 지역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, 경영 기반 확충 및 구조고도화에 필요한 재 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중소기업 육성기금(이하 "육성기금"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 - ② 육성기금은 「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3조에 따른 중소 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과는 별도의 계정으로 운용한다.
 - ③ 육성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고,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과 융자금을 세출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.
 - 1.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융자금
 - 2.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출연금 및 융자금
 - 3.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
 - 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
 - ④ 육성기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용·관리하고 「중소기업

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6조의2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을 대출 등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기금의 사용은 「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7조를 준용한다.

- 제17조(국책사업에 지역중소기업의 우선 참여) ① 정부는 국책사업을 실시하는 경우는 해당 지역 지역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. 다만 국방 관련 국책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국책사업의 범위, 기준 및 우선 참여 방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8조(지역중소기업에 대한 판로지원사업) ① 시·도지사는 지역중소 기업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 거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 - 1. 지역중소기업 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·판매 또는 사후 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
 - 2. 지역중소기업의 국내외 전시·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
 - 3. 국내외의 거래알선과 상품홍보를 위한 정보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
 - 4. 지역중소기업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업
 - 5. 지역중소기업의 국외 조달 및 유통시장 진출지원에 관한 사업
 - 6. 지역중소기업의 국외시장개척단의 파견과 국외진출거점 확보 지

원에 관한 사업

- 7. 지역중소기업의 국외진출을 위한 통·번역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업
- 8. 그 밖에 지역중소기업의 무역진흥을 위한 기반 확충과 판로개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② 시·도지사는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국내외 판로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을 위탁하거나 관련 자료와 정보 제공 및 국내외 시장조사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- ③ 시·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기관에 지원할 수있다.
- 제19조(지역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 관은 지역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 원사업(이하 "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"이라 한다)을 추진하여야 한 다.
 - 1. 기술혁신에 필요한 자금지원
 - 2. 기술혁신 과제의 사업타당성 조사
 - 3. 수요와 연계된 기술혁신의 지원
 - 4.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
 - 5. 기술혁신을 위한 경영 및 기술 지도

- 6. 기술혁신형 지역중소기업 육성
- 7. 산업 · 안전 등에 관한 해외규격 획득 및 품질향상에 대한 지원
- 8. 지역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
- 9. 산 · 학 · 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사업
- 10. 기술융합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
- 11. 그 밖에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·도지사 및 관계중앙행정기 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제4장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기반 구축

- 제20조(지역중소기업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) ① 중소벤처 기업부장관은 지역중소기업의 경제활동 지원 및 육성과 관련된 종 합적인 정보 제공을 위하여 정보를 일정한 공간에 집적시켜 통합 운영·관리하는 시설(이하 "데이터센터"라 한다)의 구축 및 운영 활 성화 시책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의 수립·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21조(전문연구평가기관의 설치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중소기업 관련 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지역중소기업의 현황 파악, 조

사, 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연구평가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평가기관이 조사, 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 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.

제5장 보칙

제22조(벌칙)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역혁신 선도 중소기업의 지정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제23조(양벌규정)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, 사용인,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(科)한다. 다만,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기본지침 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「중소

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2조의14 및 제62조의15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·도지사가 수립한 기본지침 및 육성계획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·도지사가 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기본지침 및 육성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이를 기본지침 및 육성계획으로본다.

제3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1항 중 "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2조의17에 따라 지역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"을 "「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 진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에 따른 육성기금"으로 한다.

-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8조의5제1항 중 "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2조의17에 따라 지역중소기업육성관련기금"을 "「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에 따른 육성기금"으로 한다.
- ③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7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2조의17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"을 "「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4항에 따른"으로 한다.
- ④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의2제2항 중 "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2조의17에 따라 지역중소기업육성 관련 기금"을 "「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에 따른 육성기금"으로 한다.

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62조의14부터 제62조의18까지를 각각 삭제하고, 제62조의24제2항 중 "시·도지사는 육성계획의 수립·시행과"를 "시·도지사는"으로 한다.

⑥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호바목 중 "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2조의15에 따른 지역중소기업"을 "「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"으로 한다.